



KIEP 기초자료
19-19

2019년 11월 19일

APEC 서비스무역제한 지수 개발 논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ebpark@kie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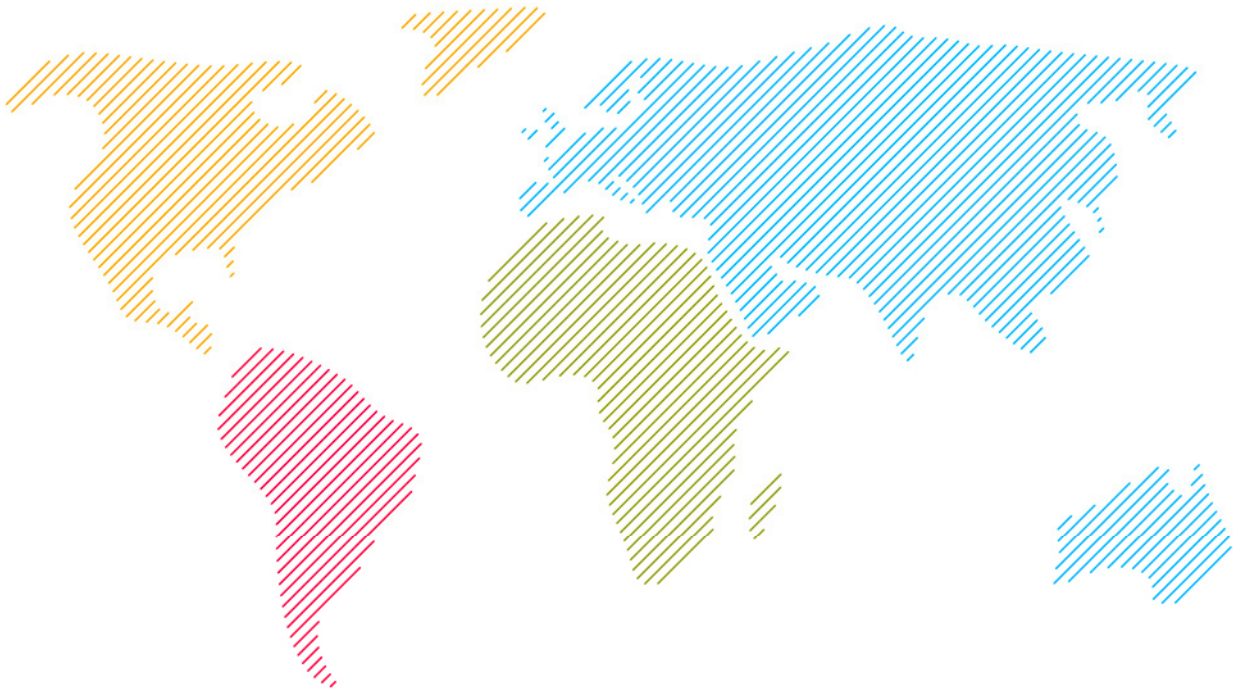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요약

- ▶ APEC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2015)’와 구체적 협력 지침이 담긴 ‘APEC 서비스협력 로드맵 (2016)’을 발표함.
 - 급속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비해 APEC 내 서비스무역 규모는 적은 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PEC은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APEC은 2016년부터 역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의 서비스 규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여 향후 역내 서비스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로 하고 2018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를 개시함.

- ▶ 우리 정부는 국내적으로 서비스산업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2017.12)’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한국은 APEC에서도 서비스무역 활성화 분야의 논의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APEC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APEC은 OECD, WB,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APEC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지수를 개발하기로 함.

- ▶ APEC 지수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4차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참여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임.
 - APEC 지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4개국을 대상, MFN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여 개발한 지수를 2020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추후 APEC 특수성을 지수에 반영할 예정임.
 - 현재까지 지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및 대상 분야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더 많은 국가와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서비스무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APEC 지수 개발은 시범사업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으로 확대함으로써 APEC STRI 지수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차 례

1. 연구 배경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 가. OECD
 - 나. World Bank
 - 다. World Bank/WTO
3. APEC 내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개발
 - 가. 논의 배경
 - 나. 논의 현황

4. 향후 과제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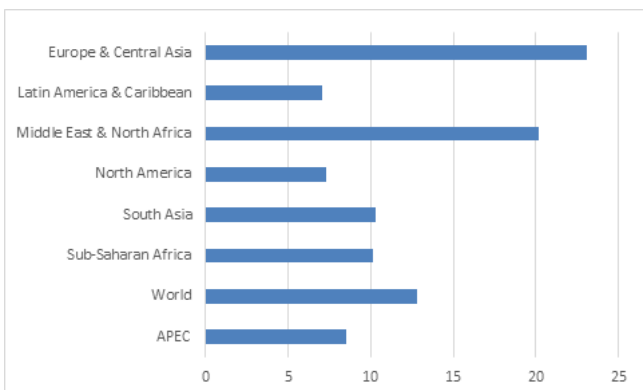
부록

1. 연구 배경

■ 대다수의 선진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국경간 서비스무역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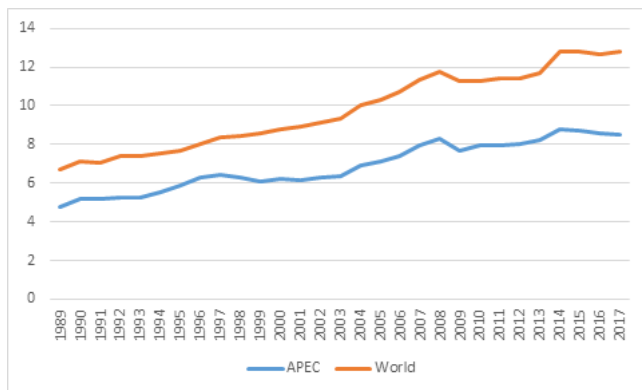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은 세계 GDP의 3분의 2를¹⁾ 차지하며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서비스산업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GDP의 75%, 고용의 85%를 차지하고, 주요 개발도상국도 GDP의 40%, 고용의 70%를 차지함.²⁾
- 서비스산업은 세계 각 지역에 법률, 금융 전문가 서비스 등과 같은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운송, 로지스틱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최종재를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무역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그 외에도 서비스산업은 인프라 건설, 디지털 서비스무역을 통한 혁신적인 도시 건설, 콘텐츠 개발 및 전송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경제·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서비스업은 APEC이 목표로 하는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비율(2017)



주: APEC 자료만 StatsAPEC 활용.
자료: WB Databank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비율 추이(1989~2017)



자료: StatsAPEC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전 세계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7년 기준 65% 기록(WB, Service, value added(% of GDP)).

2) OECD(2017), *Service Trade Policies and the Global Economy*.

■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APEC 내 서비스무역 규모는 적은 편이며(2017년 기준 8.5%³⁾),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함.

- 서비스무역 규제는 기업들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며 중소기업(SM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청 제조 산업(downstream manufacturing industry)에는 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
- 경쟁 제한, 투명성 부족, 외국인투자 제한, 인력이동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장벽이 서비스무역 촉진을 방해하는 요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분야별 환경에 알맞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을 기초로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국가별 서비스무역 규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개발함.

- APEC은 최근 각 회원국의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을 파악하고 알맞은 역내 서비스무역 정책을 수립하고자 세계은행 및 OECD 등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하여 APEC 자체 지수를 개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종류와 방법론을 정리하고 2018년 5월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서비스무역 규제 측정 도구인 APEC 지수 개발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국가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서비스무역은 일반 재화의 무역과는 달리 이를 가늠할 수 있는(tangible)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무역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서비스무역 통계의 집계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국내 무역 규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각국의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함.
- 세계은행 및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가별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국가마다 상이한 서비스 관련 국내규제를 수치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개발함.

3) StatsAPEC, <http://www.statistics.apec.org>.

표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비교

	OECD(2018)	World Bank(2012)	World Bank/WTO(2016)
국가	45개국(12개 APEC 회원국)	103개국(16개 APEC 회원국)	71개국(19개 APEC 회원국)
분야	22개 분야	19개 분야	23개 분야
데이터 출처	회원국 내 법/규정	기업 설문조사	국가 내 법/규정 & 기업 설문
측정점	국가별 2014~17년 동안 데이터 수집	2008~11년 동안 데이터 수집 국가당 1 data point	2016년도에 데이터 수집(1회)
업데이트	매년 업데이트 중	업데이트 계획 없음	-
정책분야	1) 외국인 접근 제한 2) 인력이동 제한 3) 기타 차별 조치 4) 경쟁에 대한 장벽 5) 규제 투명성	1) 외국인 자본 및 접근 제한 법률 2) 면허 요건 3) 운영에 대한 제한 4) 규제 환경 5) 이민 규정 및 자격요건	1) 시장진입 조건 2) 시장 운영 조건 3) 경쟁에 대한 제한 조치 4) 행정절차 및 규제 투명성 5) 그 외 다양한 제한적 조치

자료: APEC 제2차 서비스무역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회의(2018. 8. 12).

가. OECD

■ OECD는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장벽을 정량화하여 서비스무역 개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6월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사업을 개시함.

-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컴퓨터, 전문직(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통신, 건설 서비스 등 4개의 시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규제 환경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모색함.
- OECD STRI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변화되는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이 반영되고 있으며 지수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를 18개(2014년 기준)에서 22개(2018년 기준)로 확장함.
 - 서비스무역 제한 조치를 수치화하기 위해 규제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STRI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서(44개 국가) 16,000개를 바탕으로 산출된 데이터임.
- 데이터는 OECD에서 각 국가가 공개하는 법령을 참고하여 직접 수집하며, 연방국가의 경우 대표되는 주(state) 혹은 지역(province)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표 2.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대상국가 44개	OECD 회원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총 35개국
	OECD 회원국 외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총 9개국
대상분야 22개	컴퓨터 관련서비스, 건설, 법률(국내, 국제), 회계(회계, 감사), 건축, 통신, 유통, 방송, 음악, 영화, 상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 도로, 쿼리어, 화물취급(항공, 항구, 철도, 도로), 보관 및 창고(항공, 항구, 철도, 도로), 포워딩서비스(항공, 항구, 철도, 도로), 통관서비스

자료: OECD STRI 웹사이트(<http://www.oecd.org/trade/topics/services-trade>) 참고하여 저자 작성.

■ OECD는 서비스무역 규제를 다섯 가지 정책분야로 분류하고, 각 정책분야에 해당하는 세부규제항목 즉 규제 조치 (measures)를 선정하여 OECD 서비스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설정한 방법론에 따라 각 회원국의 규제 환경을 지수화함.

- 다섯 가지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외국인 시장진입조건(Restrictions on Foreign entry)
 - ② 인력이동제한(Restrictions to movement of people)
 - ③ 기타 차별적 조치(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 ④ 경제제한(Barriers to competition)
 - ⑤ 규제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
- 정책 분야별 세부규제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각 회원국 국내 법규의 특성에 따라 점수를 책정함.
- 정책 분야별 30~50명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다섯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 판단이 반영된 가중치 (weighting)를 각각 부여함.
 -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 정책분야별 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무역제한성이 높은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며 정책 분야에 포함된 세부규제 항목에는 동등가중치(equal weight)를 적용함.
 - 분야별 가중치에 동등가중치와 무작위 가중치(random weight)를 각각 적용하여 전문가 그룹의 주관적 가중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테스트함.
- OECD STRI는 회원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을 0과 1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한 형태이며 0에 가까울수록 서비스무역에 개방적이며, 1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으로 나타남.

■ STRI 세부규제 항목별 점수 부여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진법적 배점(binary scor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조치 데이터의 특징과 분야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여 점수화함.

- 무역장벽을 수치화하기 위해 세부규제항목에 해당하는 조치(measures)들이 무역 제한적 성격의 규제가 있을 경우 1점, 없을 경우 0점으로 별점을 부여하는 이진법적 배점 형식임.
- 데이터가 연속적(continuous)일 경우에는 단일 임계치를 설정하여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1점을 부여하거나 다단계 범위구간(brackets)과 다중임계치(multiple thresholds)를 적용하여 단계별로 별점을 부여함.

표 3. '규제투명성 및 행정요건'에 해당하는 연속 조치(continuos measure)별 임계치

측정(measures)	해당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1점 부여
비자 발급 소요시간(일)	근무일 기준 10일
기업 설립 시 공식적인 절차 소요시간(일)	20일
기업 설립 시 공식적인 절차 소요비용(USD)	1인당 소득의 8.6%
기업 설립 시 공식적인 단계	7단계
건설 허가 공식적인 절차 소요시간(일)	138일
건설 허가 공식적인 절차 소요비용(USD)	1인당 소득의 57.8%
창고 건설 시 공식적인 단계	14단계
지급 불능 해결 시간(연도)	2년
지급 불능 해결 비용(재산액 중 %)	재산의 9%
세관신고 허가 제출일과 통관수속 간 시간(일)	2일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비용	100달러

주: WB 기업환경평가 지수 2004~11 평균치를 활용하여 임계치 설정.

자료: OECD(May 2014), STRI Scoring Methodology note.

■ 특정 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이진법적(binary) 형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 배점, 위계체계(hierarchy system)에 의한 자동배점(automatic scoring)⁴⁾ 혹은 이원화 체계(two-tier system)⁵⁾에 의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위계구조(hierarchy) 혹은 결합효과(joint effect) 배점 형식을 취하는데 전문 분야의 면허 취득 시 출신 제한이 있거나 외국인의 상업적 주재(WTO GATS⁶⁾ 모드 3)과 관련하여 외국인 지분이나 법인 설립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하위 목록에 있는 조치들은 별점이 추가됨.
- 통신 분야의 경우 위계구조 방식과 이원화된 점수체제로 점수를 부여함.
 - 통신 분야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같은 기반시설로 인한 막대한 신규 진입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미 시장경쟁이 확립된 구조의 국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점수체제로 ① 상당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곳 ② 시장경쟁이 가능한 곳 두 형태로 나뉘어 점수를 부여함.
- 운송 분야는 항공, 해상, 철도 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GATS에 포함된 네 가지 모든 서비스 거래 방식(mode)을 통해 거래되며 때로는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어 분야별로 위계구조 방식 혹은 다른 보완적 조치 등으로 점수를 부여함.
- 큐리어 서비스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서 독과점 국영기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통신 분야와 동일한 방법인 이원화된 점수체계(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이한 점수체계를 따름)를 도입하고 있음.
- 금융 분야는 상업은행, 보험 등이 포함되며, 위계구조에 따른 점수부여와 이 분야만의 특징이 반영된 예외적인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⁷⁾을 제시함.
- 그 외 OECD STRI 점수 배점의 특징은 불필요한 제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별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별점을 부여하는 역별점(inverted scoring) 방식도 동시에 사용함.⁸⁾

■ OECD STRI는 매년 변화된 규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고 분야별, 국가별 STRI 분석 자료도 제공되며, 정부의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OECD STRI는 2014부터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분야와 국가의 범위도 확장되고 수치화하는 방법도 수정·보완됨.
- 또한 STRI를 활용하여 서비스무역 장벽의 관세 상당치(tariff equivalent) 추정 연구⁹⁾ 및 각 국가의 STRI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15년에는 STRI와 GATS상의 서비스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보고서¹⁰⁾를 발간하였으며 회원국별 서비스 규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STRI Heterogeneity 지수¹¹⁾도 분야별로 제공함.

4) 무역제한적 특징을 가진 특정 규제항목이 이와 종속적으로 연관 있는 규제항목에 영향을 주어 자동적으로 1점씩 부여되는 점수 산정방식.

5) 특정 분야의 시장경쟁 유무에 따라 규제항목의 점수 부여방법을 달리하는 방식.

6) WTO 협정부속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서비스무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재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는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12개 분야가 있으며 서비스 거래방식은 모드 1~4로 분류함.

7) OECD(2016),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STRI): The Trade Effect of Regulatory Differenc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89.

8) APEC 전문가포럼 회의(2018. 7. 25) 중 발표자료 내용 참고.

9) Benz, S.(2017), "Services trade costs: 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 trade restrictions using gravity estimation,"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00, OECD.

10) Miroudot, S. and K. Pertel(2015), "Water in the GATS: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85, OECD.

■ 반면 OECD STRI는 정부가 공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되나 동시에 정부의 검토를 거치면서 오히려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표에 포함된 내용이 서비스 규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

- OECD가 자료 수집 시, 각국의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STRI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서비스장벽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더불어 OECD에서 자료를 요청받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됨.
- OECD STRI 자체가 서비스 규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협상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느 부분이 개방되었는지를 STRI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¹²⁾

나. World Bank

■ 세계은행(WB)은 국가의 서비스무역 제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에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논의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2011까지 수집한 데이터¹³⁾를 토대로 개발함.

- 세계은행 서비스무역장벽 데이터베이스(STRD)는 19개 서비스 분야와 103개 국가를 포함하며, 그중 APEC 회원국은 16개국 있음.
 -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외국인지분제한 및 진입 관련 법문서(Legal form of entry and restrictions on foreign equity)
 - ② 면허 필요(Licensing requirements)
 - ③ 운영제한(Restrictions on operation)
 - ④ 규제환경(Regulatory environment)
 - ⑤ 이민규정 및 자격조건(Immigration rule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표 4. WB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대상국가 103개	103개국 중 APEC 회원국: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미국, 베트남 등 총 16개국 포함	
대상분야 19개	금융서비스	은행대출, 은행예금,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통신서비스	유선통신, 무선통신
	유통서비스	소매유통
	운송서비스	국내항공여객, 국제항공여객, 철도화물, 해상, 도로화물, 해운보조
	전문서비스	회계, 감사, 국제법자문, 국내법자문, 법정대리인

자료: World Bank(2012), Policy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_H.

12) KIEP APEC연구회 전문가물 발표자료(2018. 7. 25).

13) 2008~11년에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로 2012년에 STRI를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2~16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7년 10월에 업데이트된 STRI를 발표함.

■ 세계은행은 서비스무역 규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 OECD 회원국의 경우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고,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함.

- 현지 법률사무소는 현지 투자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곳으로 지정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정책자료 및 설문결과는 국가 정부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
- OECD 회원국 정부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부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국가가 절반 정도임.¹⁴⁾

■ 세계은행의 STRI 구축방식은 특정 규제항목에 대하여 [표 5]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0(개방적)~100(폐쇄적)의 값을 가지는 지수로 수치화함.

- 수집한 분야별 조치항목들은 [표 5]와 같은 주요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함.
- 세계은행은 OECD와 달리 GATS 상의 서비스 거래방식인 1~4 모드(Mode)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중치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 분야별, 세부항목별로 부여함.¹⁵⁾
- [모드 1]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모드 2]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 3]은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모드 4]는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되며 WB STRI에 포함된 지표는 1, 3, 4 모드로 구분함.

표 5. World Bank STRI 주요 점수 부여 방법

방법	내용	점수화 예시
5 배점 체계	각 조치항목들의 제한 정도에 따라 0부터 100까지(0, 25, 50, 75, 100) 5단계로 나누어 측정함.	0= 완전한 개방 25= 개방되어 있지만 minor한 제한 50= 작거나 엄한 제한이 있는 경우 75= 기회가 거의 없는 제한적인 환경 100= 완전히 제한된
점수형태의 범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제한 조치 항목일 경우 괄호(bracket)에 해당하는 숫자 범위별 점수를 부여, 예를 들면 외국인 지분을 제한 등이 있음.	100% 허용: 0 50~99% 허용: 0.25 25~49% 허용: 0.5 0~24% 허용: 0.75 허용불가: 1
조치의 조합	제한 조치 간 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두 조치 중 하나만 있을 경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	Mode 3의 경우, domestic entity acquisition 조치와 greenfield investment 조치 모두 해당되는 경우 0.75점 부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0.5 부여
위계구조	특정 제한조치 중 위계구조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조치에 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	외국인 교육 및 면허 자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교육 및 지역 면허 요건을 고려

자료: APEC 제2차 서비스무역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회의(2018. 8. 12).

14) APEC 연구회 대외경제전문가풀 세미나(2018. 7. 25).

15) [부록 표 1] 참고.

- 세계은행 STRI는 대상국가가 OECD에 비해 많은 편이며 GATS에 제시된 모드별 자료의 정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매년 업데이트 되지 않아 연속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세계은행 STRI의 대상국가는 OECD STRI의 국가수보다 많은 103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드별 자료로 정리 되어 있어 서비스 무역의 형태에 따라서 살펴보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반면에 2013년 이후로는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은행, 기업 등 관계기관의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OECD STRI와 동일하게 정책분야별 가중치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다르게 부여하며 국가별 비교 이외에는 지수의 활용도가 낮은 한계점이 있음.
- 또한 세계은행 STRI는 GATS 상의 양허를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이므로 실제 서비스무역 규제와 괴리가 있음.

다. World Bank/WTO

- 세계은행은 2012년에 구축한 서비스무역제한데이터베이스(STRD)가 있고, WTO는 GATS 양허 현황, 서비스 통계, RTA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서비스무역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해 2013년에 WB-WTO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WB와 WTO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서비스 통합 정보 포털(I-TIP services)이라는 사이트¹⁶⁾를 구축하여 서비스규제 관련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국가별, 분야별, 조치별, 조치범주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지수를 활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서비스무역 규제를 MFN 기초로 수집한 정보뿐 아니라 최근 업데이트된 RTA 규제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WTO와 공동으로 APEC 19개 회원국¹⁷⁾을 포함한 71개국과 23개의 서비스 분야를 종합한 서비스무역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포털에 공개함.
- WB/WTO 서비스무역 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표 6]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 분야와 상세 분야를 설정함.

16) WB-WTO Applied Service Trade Policy(<http://i-tip.wto.org/services/>).

17)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표 6. World Bank/WTO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정책 분야

5가지 정책분야	상세 분야
시장진입의 조건(Condition on market entry)	시장 진입 형태(해외자본 제한 포함)
	기업과 사람의 양적 측정
	면허 조건, 스크리닝, 시장진입 요건
	시장진입과 연관된 기타 조건
시장 운영 조건(Condition on market operations)	서비스 공급 조건
	서비스 제공자 조건
	공공조달 조건
	시장 운영 관련 기타 조건
경쟁에 대한 조치(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	기업의 이행 조건
	정부 권리/특권
	경쟁 관련 기타 조치
행정절차 및 규제 투명성(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gulatory transparency)	행정절차
	규제 투명성(면허 포함)
	규제 기관 nature of regulatory authority
	국제 표준
그 외 다양한 제한적 조치(Miscellaneous)	기타 제한적 조치

자료: WB-WTO 제네바 워크숍, "New Database on Measures affecting Service Trade"(2018. 4. 26).

■ WB/WTO 서비스무역 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GATS상 양허 기준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실제 적용된 규제와 정책에 초점을 맞춤

- OECD에서 2014년에 STRI와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하면서 WB/WTO는 2016년에 OECD STRI와도 비교 가능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함.
- WB/WTO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되 OECD STRI의 분류 체계(taxonomy)와 유사하도록 수정·보완하여 OECD 지수와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지역의 로펌을 활용하여 만든 설문지를 통해 각 국가의 서비스무역 정책, 법령 등을 확인함.
- WB와 WTO뿐 아니라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변호사협회(IBA)와 협력하여 지수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얻음.
- WB/WTO는 지수 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아직 발표한 바는 없으나 2016년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OECD STRI 점수부여방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개발함.¹⁸⁾

18) APEC PSU에서 WTO/WB와의 면담을 통해 정리한 자료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실무그룹회의에서 발표.

3. APEC 내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가. 논의 배경

■ APEC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분야의 역내 회원국간 협력의 계기 마련을 위해 2015년 11월 제23차 정상회의에서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ASCF: APEC Services Cooperation Framework)’¹⁹⁾를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함.

-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ASCF는 서비스무역이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이며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 및 자유화에 기여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2015년 의장국인 필리핀 주도로 작성됨.
 - 서비스 부문에서 2025년까지 APEC이 협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을 포함하고, 보고르 목표에서도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목표에 있어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됨.
-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ASCF에서 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구체적 협력 지침 개발을 위해 로드맵 작성을 지시함에 따라 호주 주도로 ‘APEC 서비스협력 로드맵(ASCR: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 제24차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함.
 - APEC 고위관리회의 대표단은 ASCR의 실행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에 중간 검토(midterm review)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로드맵에 언급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예정임.
 - 동 로드맵에는 APEC 회원국의 서비스 규제환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APEC 지수와 같은 도구를 마련하여 향후 역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자는 내용²⁰⁾이 포함됨.
- [논의 체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는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²¹⁾ 산하 소그룹 중 하나인 서비스그룹(GoS: Group on Service)²²⁾에서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그룹에서는 ASCR 이행 시 모니터링과 각료보고 등의 역할을 포함한 조정역할(coordinating role), 기준지표(baseline indicator) 연구, 서비스분야 비구속적(non-binding) 원칙 개발,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 측정을 위한 APEC 지수 개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음.

19) 2015/AELM/DEC/Anxb.

20) “...We also commit to improving services-related statistics to help measure progress and inform decision-making, including establishing an APEC index on the services regulatory environment by 2020.”

21)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는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원활화, 무역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한 협력, 회원국간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CTI 산하조직은 CTI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분야별로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CTI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22) 서비스그룹은 APEC 오사카행동지침(OAA: Osaka Action Agenda)의 서비스 분야 논의를 위해 1997년 설립됨.

글상자 1.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공동 목표

1. GVC 개발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에 따라 MSME와 여성 참여 증가를 포함한 GVC 강화
2. 전문가들을 위한 국경간 이동 지원과 관련하여 상호인정 협약을 촉진하는 APEC 설계자 엔지니어 등록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구축
3. APEC 기업인 여행카드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기업인 회원국 방문의 유연성 향상
4. 2016년 APEC 구조개혁 및 서비스에 관한 경제 정책 보고서 추진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APEC 구조개혁 의제 이행
5. 합의된 환경서비스 행동계획에 따라 환경서비스의 자유화, 원활화 및 협력을 지원
6. 합의된 제조 관련 서비스 행동계획에 따라 제조 관련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 및 촉진
7. 인턴십 제도, 학생교류프로그램, 협력 정책 연구 등 교육 분야의 협력을 지원
8.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속한 발전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적절한 감독, 합법적 소비자 및 보안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화되는 세계의 맥락에서 무역 관련 데이터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접근법을 촉진
9. 금융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정 금융 서비스의 회원국간 제공 지원
10. APEC 연계성 청사진에 따라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항공, 해상, 육상 교통을 개발하는 APEC 사업 지원
11.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여향 및 관광 분야 개발에 대한 APEC 노력지지 및 APEC 관광 전략 계획(Tourism Strategic Plan) 수립
12. 서비스 분야의 국내 규제에 대한 일련의 모범 사례 원칙 개발
13. 로드맵 이행을 측정 및 지원하고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관련 통계 개발

자료: APEC Meeting Document Database (2016/AMM/011).

나. 논의 현황

1)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²³⁾

■ 한국은 APEC 내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를 주도하고 STRI에 대한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16년도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함.

- 동 워크숍에는 OECD, WTO, 세계은행 등의 STRI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서비스무역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STRI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 회원국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 세계은행 및 OECD는 각 기관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방법론(지수 산출방법, 범위 등) 및 잠재적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APEC 내 적용가능성, 초기 개발비용,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유지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함.
-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국은 APEC 자체적으로 서비스무역환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 기준에 개발된 STRI 활용 여부 △ APEC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수 필요 △ 단순비교가 아닌 정책에 대한 분석 목적으로 개발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함.

23) 2016년 5월 12일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함.

- 한국은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 측정에 관한 역량개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서비스그룹(GoS)과 무역투자위원회(CTI)의 승인을 각각 획득함.
- 한국은 APEC 회원국 중 참여의사를 표현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기존 지수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APEC STRI 지수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 한국은 APEC 회원국 모두의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APEC 회원국에 향후 계획을 회담 하였으나 중국이 OECD STRI를 확장하여 APEC 지수를 개발한다는 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참여 희망 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함.
- 2018년에는 APEC 자체 지수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고, 2019년에 일부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절차를 거쳐, 2020년에는 더 많은 참여 회원국을 포함하여 개발을 확대할 계획임을 제시함.
- APEC은 위 논의를 바탕으로 APEC 지수 개발을 담당할 실무그룹(technical group)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3월 APEC STRI 개발 실무그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출하여 승인 획득함.

2)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관련 제1차 실무그룹 회의²⁴⁾

- 한국은 APEC 지수 개발 관련 제1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회원국에 한하여 서비스무역과 서비스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수 설계에 관하여 논의를 개시함.
- 1차 실무그룹회의는 서비스무역 관련 규제 도입, 관리, 이행을 담당하는 참여회원국 정부인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국제기구 STRI 개발 담당자가 참석하여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함.
- 본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국은 13개국²⁵⁾이며 국제기구에서는 OECD STRI 개발 전문가가 참석하여 OECD STRI 설계 배경, 목적, 분야 범위, 방법론 등에 관하여 설명함.
- APEC 지수 개발 실무그룹 의장은 기존에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역내외 국가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참여회원국 중 중국, 홍콩, 페루 등은 기존 지수를 활용하여 APEC 자체 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APEC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지수가 개발되어 지수 개발사업 참여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중국은 APEC 회원국별 발전 정도 및 시스템 차이를 고려하여 지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위 설정 시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을 언급함.
- 또한 OECD STRI 가중치를 부여하는 전문가 선발 시 전문가의 배경에 따라 주관적인 분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전문가의 대표성 및 투명성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기존 지수 변경 시 역외 국가들과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원국간 비교만 가능할 경우 APEC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함.
- 참여회원국은 다음 실무그룹 회의 시 APEC 지수 개발 목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더불어 국제기구의 STRI 중 APEC 지수로 확장할 기존 지수를 선택, 포괄 범위 선정, 정책분야별 가중치 조정, 업데이트 방안 등 종합적인

24) 2018년 5월 18일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

25) 대만,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칠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호주, 홍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3)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관련 제2차 실무그룹 회의²⁶⁾

■ 제2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APEC 지수 개발 목표와 기존 지수 및 서비스 업종 선정에 관한 회원국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짐.

- [지수 개발 목적] 실무그룹 회의 의장은 APEC 자체 지수 개발 목적으로 정책개혁 점검, 다른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등을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은 동의를 표하고 정책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신 자료의 분석과 보다 포괄적인 분야 포함, 역외 국가와 비교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수가 개발되기를 희망함.
- [기존 지수 선정] 지난 회의에 이어서 OECD와 WB, WB/WTO에서 개발한 기존 지수 중 하나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수 회원국은 OECD STRI를 기반으로 APEC 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중국과 홍콩 등 일부 회원국이 추가적인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함.
 - 호주, 칠레, 페루, 미국은 OECD STRI에 대하여 지수의 유연성, 검증절차의 투명성, 정부와의 협의 지속, APEC 회원국들의 수요에 기반한 조정 가능성 등을 주요 장점으로 언급함.
 -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WB/WTO 지수의 경우 OECD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OEC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한하여 해당 국가의 로펌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부연함.
 - 이에 대만은 OECD와 WB/WTO 2개의 지수를 활용하여 통합지수로 개발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두 지수의 데이터베이스만 유사하고 지수 산정방식은 상이하여 통합이 어렵다고 함.
- [서비스 업종 선정]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2018년도 10월 말까지 회원국이 희망하는 서비스 관련 10개 업종을 선정하여 제출한 뒤 공통되는 5개 업종을 선정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물류서비스, 선박 건조 서비스, 무역 원활화 관련 서비스 분야 등이 포함될 것을 희망하고 아직 규제가 구성되는 단계인 디지털 분야는 제외하기를 희망함.
 - 미국은 아태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업종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서비스 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였고, 중국에 대하여 국가들의 추가적인 지수 참여를 저지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2019 정상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연계성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선호를 표명함.

■ 실무그룹 참여국들은 다음 실무그룹 회의 시 회원국이 제시한 서비스 분야 중 공통된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을 따라 참여국 속도에 맞게 시범 지수(pilot study)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APEC 시범 지수에 참여하는 국가와 포함되는 서비스 업종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지하면서도 합의되지 않은 업종에서 추가적인 진전은 참여 회원국별로 가능하도록 하여 각국이 속도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 중국은 자발적으로 시범지수에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 업종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26) 2018년 8월 12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

- 홍콩은 참여 국가간 서비스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회원국이 선호하는 공통 분야를 모색할 것을 제안함.

4)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관련 제3차 실무그룹 회의²⁷⁾

■ 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2018년 10월 참여 회원국별로 제시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공통된 분야인 유통, 통신, 컴퓨터, 물류(보관 및 창고) 총 4개의 서비스 업종을 선정함.

- 이번 시범 사업에는 칠레, 페루, 베트남, 대만 등이 참여하기로 자원하였으며 OECD STRI를 활용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함.
- OECD STRI 담당자는 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APEC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기초 데이터(baseline data) 수집을 동시(two track approach)에 진행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OECD는 APEC의 특수성을 반영한 APEC 자체 지수를 개발하지만 OECD에서 개발한 STRI와 비교 가능한 지수가 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OECD는 현재 EU STRI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APEC 지수 개발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힘.

표 7. APEC 지수 시범사업(pilot program)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서비스 업종

참여국가	제안한 서비스 분야	APEC Index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분야 4개
칠레	유통, 통신 서비스	유통, 통신, 컴퓨터, 물류(보관 및 창고) 서비스
대만	유통, 컴퓨터, 통신, 물류(보관 및 창고) 서비스	
페루	유통, 컴퓨터, 통신, 물류(보관 및 창고) 서비스	
베트남	유통, 컴퓨터, 물류(보관 및 창고) 서비스	

자료: 저자 작성.

■ 제1차 실무그룹회의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가중치 부여 방법론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질의와 이번 APEC 지수 시범사업 추진 시 결정해야 할 가중치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함.

- 회원국은 APEC 지수 개발 시 다섯 가지 정책 분야의 가중치를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PEC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함.
- 중국은 가중치를 결정하는 OECD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APEC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APEC 출신 전문가를 전문가그룹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미국은 비APEC 출신이지만 APEC 경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비APEC 출신 전문가도 포함시킬 것을 제시함.
- OECD는 전문가그룹 의견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 수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중치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강조함.

27) 2019년 2월 28일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

■ OECD는 APEC 지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MFN 기반으로 한 지수를 먼저 개발할 계획이며, 이후에 FTA/RTA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음을 제안함.

- 중국, 홍콩 등은 RTA/FTA 협정을 반영하여 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특히 중국은 서비스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항목도 지수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미국은 RTA/FTA 협정을 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흥미로운 제안이나 특정 FTA/RTA 협정을 반영하는 것은 지수에 차별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의장은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MFN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FTA/RTA 협정 반영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이번 시범사업의 예산은 9만 5,000달러(USD) 정도로 예상되며, APEC 구조개혁기금(RASSAR)에 기금을 신청하여 동 펀딩을 기반으로 OECD STRI 개발팀이 개발을 착수할 예정임.

5)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관련 제4차 실무그룹 회의²⁸⁾

■ 4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OECD에서 현재까지(2019년 8월 기준) 수집한 예비지수 데이터베이스(preliminary baseline database)를 소개하고 APEC의 특정 요소와 가중치 반영 문제, 개발 현황 정보 공유에 관하여 논의함.

- OECD는 APEC 지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칠레, 페루, 대만, 베트남 등 4개의 회원국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하였고 현재 참여 회원국들이 법령에 관한 사실 정보를 검토 중임을 밝힘.
 - 2019년 3~8월까지 6개월간 수집하였고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법·규제를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4개국의 법·규제 300개를 수집하여 연도당 1,100개(6년간 6,600개)의 관측 값(observations)을 구축함.

표 8. 참여국 Baseline Database 범위

참여국가	유통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물류서비스
칠레	✓		✓	
대만	✓	✓	✓	✓
페루	✓	✓	✓	✓
베트남	✓	✓		✓

■ OECD는 4개 국가의 baseline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참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APEC만의 특정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

- [컴퓨터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규제보다는 모든 재화 혹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법·규제가 대부분이며 투자 측면에서는 개방적이나 외국인투자 심사, 법인 설립, 외국 법인에 관한 통제 관련 제한이 존재함.

28) 2019년 8월 12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칠레에서 개최.

- 그 외 사람 간 이동에 대하여 쿼터(quota)는 없지만 머무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노동시장 심사, 공공 조달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함.
- [통신서비스] 참여한 회원국 전체에서 가장 규제 정도가 높았던 분야이며, 외국인 소유에 대한 투자 규제가 존재하고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떨어짐.
- [유통서비스] 도소매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가장 개방적 즉 시장친화적인 편이지만, 시장경쟁 부문의 규제가 존재함.
- [물류서비스] 모든 회원국에 해당되는 수평적(horizontal) 규제가 대부분이며 통관 부문에서 창고(warehouse) 서비스의 경우 엄격한 조건이 존재함.
- 또한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선원들의 비자(visa) 여부가 효율적인 서비스무역에 한계가 될 수 있음.
- [APEC 특정 요소 반영] 실무그룹 의장은 APEC 지수 개발 시 반영할 수 있는 APEC 특정 요소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 OECD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제도 및 국내 규제 투명성 관련 노력을 지수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중국도 무역원활화 요소를 다섯 가지 정책 분야 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OECD와 미국이 대조가능성(comparability) 및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로 기존의 방법론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제기함.

■ APEC 지수 개발 시 OECD 기존 STRI의 가중치와는 별개로 APEC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새롭게 서비스 분야별 가중치를 설정하기로 함.

- OECD는 회기간 APEC 전문가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설문지와 관련 작업 개요 문서(outline paper)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힘.
- OECD는 가중치 설정의 주관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가중치 조정과정에서 OECD STRI와 같은 다른 STRI와의 대조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APEC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참여 회원국은 APEC 지수를 다른 기관의 STRI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현재 개발 중인 APEC 지수 및 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무그룹에서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 APEC 고위관리 대표는 APEC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공동체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APEC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측면에서 동 지수의 개발이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회원국은 시범 지수 사업의 진행과정을 OECD에서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국과 칠레는 그 공유 채널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 회원국의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중치 설정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OECD STRI와 APEC 지수를 보다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두 지수를 APEC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PSU측은 두 지수 모두 게재하는 것은 예산, 통계 정보의 저작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함.
 - 시범 지수 사업 관련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OECD STRI와 APEC 지수간의 연계성을 위해 APEC 웹사이트에 두 지수를 게재하는 부분은 APEC 사무국과 OECD 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4. 향후 과제

- APEC 지수 개발의 목적은 먼저 회원국의 서비스무역 규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추후에 역내 혹은 비회원국까지 확대한 글로벌 지표를 구축하여 서비스무역의 전체적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임.
 - APEC 지수는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STRI와도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정책분석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APEC 지수를 통해 APEC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협의체와 비교할 수 있고 APEC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에서 폐쇄적인 분야를 파악하여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 정책 수립 혹은 필요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가 서비스시장 개방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혁과 더불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최근 한국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 전략’²⁹⁾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고부가 서비스수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수출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
- 문헌 조사를 통해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이 서비스무역 증진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보고서³⁰⁾³¹⁾를 확인할 수 있음.
 - 참고문헌³²⁾의 실증분석 결과는 OECD STRI에 따라 서비스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STRI가 1% 하락하면 서비스수출이 0.0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 분야별 시장접근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 장벽, 규제투명성 등을 개선할수록 서비스무역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업의 생산 비용감소 및 생산성 증가로 서비스무역이 증가하는 것을 뜻함.
 - APEC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PEC 내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분야 혹은 규제를 APEC 지수를 통해 선별하고 규제완화사업을 통해 서비스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OECD 무역위원회 회의에서는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하여 국가간 규제공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며 APEC도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를 위해 서비스무역 관련 OECD 연구사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APEC 자체적으로 아태 지역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 작업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 APEC 지수 개발 시 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가중치에 대하여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9)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함. 세계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우쳐 있음. 우리나라의 고부가 서비스수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수출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제시함.

30) 성한경, 박혜리, 남호선, 양주영(20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 최남석, 박의성(2018),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세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전략』, 한국은행 전북본부.

32) 위의 자료.

- 서비스 분야 중 무역원활화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여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데,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pool)을 늘려 결과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APEC 지수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4차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참여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시범 지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및 대상 분야의 범위가 현재까지 4개의 회원국, 2~4개 정도의 서비스 분야로 제한적임.
 - 더 많은 국가의 참여와 더불어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야 APEC 서비스 무역의 규제 현황과 다른 지역협약체의 비교가 가능함.
 - 참여하는 회원국도 서비스무역에서 폐쇄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무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APEC 지수 개발은 시범사업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으로 확대됨으로써 APEC STRI 지수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더불어 APEC은 동 지수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 외에도 APEC의 중장기 비전인 무역투자 원활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무역에서 규제 환경을 파악하는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음.
 -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OECD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를 바탕으로 디지털무역규제지수를 개발한 바 있으며 APEC 내에서도 디지털무역에 장벽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남상열, 고혜진, 김성용, 박승중. 2012. 『OECD 통신서비스 무역장벽지수 분석과 무역투자자유화에의 시사점』. 기본연구 12-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문종철, 김천곤, 조현승. 2016.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발전방안과 업종별 활용』. 연구보고서 2016-794. 산업연구원.
- 박순찬. 2012. 「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과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EU학 연구』, 17권 1호. 한국 EU학회.
- 성한경, 박혜리, 남호선, 양주영. 20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09-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07. 『APEC 용어집』.
- 최남석, 박의성. 2018.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전략』. 한국은행 전북본부.
- KIEP 대외경제전문가포럼 APEC분과 회의. 2018. 「APEC 서비스 무역환경 지수 개발시 고려 사항 정리」. 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 발표자료. (7월 25일)

[영문자료]

- APEC. 2018. “Overview of the Work on Measur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Services Trade in the APEC Region.” (May)
- _____. 2018. “The OECD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May)
- _____. 2019. “Advancing the Services Agenda in APEC: A Focus on Implementing the APEC Pilot Index.” (August)
- _____. 2019. “Briefing on the Baseline Database of the Pilot Program.” (August)
- Benz, S. 2017. “Services trade costs: 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 trade restrictions using gravity estimation.” OECD Trade Policy Papers, No. 200. OECD.
- Ingo Borchert, Batshur, Aaditya Mattoo. 2012. “Guide to the Services Trade Restrictions Database.” World Bank.
- Miroudot, S. and K. Pertel. 2015. “Water in the GATS: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85. OECD.
- OECD. 2009. OECD Experts Meeting on the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STRI)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STRI.
- _____. 2014. STRI Scoring Methodology note.

_____. 2017. *Service Trade Policies and the Global Economy*.

WB-WTO 제네바 워크숍 발표자료. 2018. “New Database on Measures affecting Service Trade.” (April 26)

World Bank. 2012. Policy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웹사이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https://www.apec.org>.

세계은행. <https://www.worldbank.org>.

OECD. <http://www.oecd.org>.

StatesAPEC. http://statistics.apec.org/index.php/apec_psu/index.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APEC 서비스무역접근조건 데이터베이스 <http://www.servicestradeforum.org>.

부록

부록 표 1. World Bank STRI 분야별 가중치

분야	GATS 상 모드별 세부 항목		세부항목별 가중치	분야별 가중치
금융 서비스	모드 1	예금승인(Deposit acceptance)	0.15	0.149
		은행대출(Banking lending)	0.15	
	모드 3	예금승인(Deposit acceptance)	0.85	
		은행대출(Banking lending)	0.85	
보험 서비스	모드 1	생명 보험(Life)	0.1	0.095
		자동차 보험(Automobile)	0.1	
		재보험(Reinsurance)	0.8	
	모드 3	생명 보험(Life)	0.9	
		자동차 보험(Automobile)	0.9	
		재보험(Reinsurance)	0.1	
통신 서비스	모드 3	유선통신(Fixed-line)	1	0.095
		무선통신(Mobile)	1	
유통 서비스	모드 3	소매유통(Retail distribution)	1	0.239
운송 서비스	모드 1	국제항공여객(Air passenger international)	0.7	0.223
		국제항공화물(International shipping)	0.7	
	모드 3	국제항공여객(Air passenger international)	0.3	
		국내항공여객(Air passenger domestic)	0.3	
		국제항공화물(International shipping)	0.3	
		해운보조(Maritime auxiliary)	1	
		도로화물(Road freight)	1	
		철도화물(Rail freight)	1	
전문직 서비스	모드 1	회계(Accounting)	0.2	0.199
		감사(Auditing)	0.2	
		국제법자문(International law)	0.2	
	모드 3	회계(Accounting)	0.4	
		감사(Auditing)	0.4	
		국내법자문(Domestic law)	0.5	
		국제법자문(International law)	0.4	
		법정대리인(Court representation)	0.5	
	모드 4	회계(Accounting)	0.4	
		감사(Auditing)	0.4	
		국내법자문(Domestic law)	0.5	
		국제법자문(International law)	0.4	
		법정대리인(Court representation)	0.5	

자료: World Bank(2012), Policy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부록 표 2. World Bank/WTO 주요 점수 부여 방법(in progress)

방법	내용	점수화 예시
이분법 점수화 (Yes/No)	해당 분야에 규제가 있으면 1점 부여(Yes) 규제가 없으면 0점(No),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OECD STRI와 동일)
6배점 체계	각 조치항목들의 제한 정도에 따라 0부터 1까지(0, 0.125, 0.25, 0.50, 0.75, 1) 6단계로 나누어 측정함.	0= 완전한 개방 0.25= 개방되어 있지만 minor한 제한 0.50= 작거나 엄한 제한이 있는 경우 0.75= 기회가 거의 없는 제한적인 환경 1= 완전히 제한된 *행정절차 및 규제 투명성 영역에서의 특정 조치는 0.125 부여
조치의 조합	제한 조치간 조합(Combination of sets of measures)이 있는 경우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두 조치 중 하나만 있을 경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	Mode 3의 경우, domestic entity acquisition 조치와 greenfield investment 조치 모두 해당되는 경우 0.75점 부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0.5 부여 Mode 4의 경우, 모든 방식으로 전문가 이동이 제한되면 1(정책분야 카테고리별로 본다면 0.25씩 부여)
위계구조	특정 제한조치 중 위계구조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조치에 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	(OECD STRI와 동일)
점수형태의 범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제한 조치 항목일 경우 괄호(bracket)에 해당하는 숫자 범위별 점수를 부여, 예를 들면 외국인 지분을 제한에 대하여 점수 부여 시 동 방법을 따름.	100% 허용: 0 50~99% 허용: 0.25 25~49% 허용: 0.5 0~24% 허용: 0.75 허용불가: 1

주: WB/WTO는 지수 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아직 발표한 바는 없으나 APEC PSU에서 WTO/WB와의 면담을 통해 정리한 자료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실무그룹회의에서 발표.

자료: APEC 제2차 서비스무역 APEC 지수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회의(2018. 8. 12).